

KCAB 국제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KCAB and Arbitration Rules of CIETAC

신 군 재*
Koon-Jae Shin

〈목 차〉

- I. 서 론
- II. 한국과 중국의 중재제도 개관
- III. 중재절차별 KCAB 국제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의 비교
- V. 결 론

주제어 : KCAB 국제중재규칙, CIETAC 중재규칙, 국내중재, 국제중재

* 신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skj0911@silla.ac.kr

I. 서 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우리와 가장 가까웠던 국가이다. 중국은 시장개방후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한·중간 교역규모는 한·중 수교 첫 해인 1992년에 63억 8천만달러이던 금액이 연평균 20% 정도의 속도로 교역량이 증가해 와, 2007년에는 수출이 1조2,181억 달러, 수입이 9,562억 달러, 총 2조 1,743억 달러¹⁾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기업과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중간의 중재제도를 비교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의 유일한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은 국제 중재수요에 부응하고 국제중재를 활성화시키고자 최근의 국제중재의 기준을 반영한 국제 중재규칙을 2006년 제정 후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1994년 민간적 성격과 행정적 성격을 갖는 중재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을 통과시키면서 행정중재제도²⁾를 취소함과 동시에 비교적 큰 도시에 중재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섭외사건은 주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에서 처리해왔다³⁾. 본 연구에서는 한중간 대외교역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양국의 중재기관인 KCAB의 국제 중재규칙과 CIETAC의 중재규칙의 문제점들을 실무적 차원에서 제시함으로써, 무역업체들이 향후 이들 중재규칙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하였다.

1) [http://stat.kita.net/top/state/\(2008.4.1방문\)](http://stat.kita.net/top/state/(2008.4.1방문))

2) 1981년에 경제계약법이 통과되면서 “쌍방이 모두 국가가 규정한 합동관리 기관에 조정과 중재 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한 “당사자중에서 중재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 행정중재제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10여년의 시간동안 연속해서 기술계약, 부동산 관리 등 여러 영역에서 중재제도가 시행되었다. 강평, “중국의 중재제도”, 한·중·일 국제중재학술대회 -중재제도의 현황과 전망-, 2003, pp.11-12.(2003.1.18. 중국 북경에서 개최한 한·중·일 국제중재학술대회에서 강평 북경중재위원회 주임이 발표한 자료 중에서 요약한 것임)

3)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은 제7장 “섭외중재의 특별규정”을 두어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는 섭외중재를 처리하는 중재기관으로 언급하고 있다.

II. 한국과 중국의 중재제도 개관

1. 한국의 중재제도

(1) 한국 중재제도 개관

한국의 중재제도는 구한말인 1895년 11월 10일 법률 제17호 ‘상무회의소 규칙’에 대한민국정부수립후에는 1957년 10월 7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5조에 처음 기록되었다. 중재가 법의 보호아래 제도화된 것은 1912년 조선민사령 제1조 제13호에 따라 일본 민사소송법이 의용된 때부터이나 한번도 이용되지 않다가, 1966년 중재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⁴⁾. 한편, 중재기관은 1966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부 내에 있던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1970년 대한상사중재협회로 독립되었고, 1980년에 현재의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이하 KCAB라고 함)으로 확대·개편되었다. KCAB는 사단법인의 민간단체이다. KCAB는 자체적인 중재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동 중재규칙은 대법원의 승인을 받고 있다.

(2) KCAB 국제중재규칙 제정

KCAB는 그동안 국제중재사건에 대해 별도의 중재규칙을 두지 않고, 국내외를 통합한 하나의 중재규칙을 적용하여 왔으나, 중재인선정방식, 중재언어, 낮은 중재인수당 등으로 인해 국제중재사건을 처리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KCAB는 국제중재수요에 부응하고 국제중재를 활성화시키고자 최근의 국제중재의 기준을 반영한 별도의 국제중재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국제중재규칙은 2006년 4월 국제중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에 국제중재규칙의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중재원 내부에 국제중재규칙 제정 TFT를 구성하여 미국 AAA 및 ICC, SIAC 등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국제중재규칙을 검토한 후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2007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규칙은 기존의 중재규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분쟁 당사자들이 기존 규칙과 국제중재규칙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규칙과 병행한 규칙이다.

2. 중국의 중재제도

(1) 중국 중재제도 개관

중국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試行)

4) 대한상사중재원·한국중재학회, 「주해 중재법」, 2005, vii

을 제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1991년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 통과되었고, 1999년도에는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제간 무역분쟁은 중재나 소송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1986년에 뉴욕협약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개의 법률, 80여개의 행정 법규, 200개에 가까운 지방법규에서 중재를 규정하여 오다가 1994년 통합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⁵⁾(이하 중국 중재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1995. 9. 1.부터 시행하였다. 중국은 중재를 국내중재와 섭외중재로 구분하고 섭외중재제도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이하 CIETAC이라고 칭함)의 국제경제무역중재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CMAC로 약칭)의 해사중재로 나뉘어 발전하였다.

(2) 중국의 섭외중재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재를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로 구분하고 있지만, 중국은 특이하게도 국내중재와 섭외중재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의 섭외중재는 중국 특유의 분류방식으로⁶⁾, 우리나라의 국제중재와 마찬가지로 국내중재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섭외중재는 외국, 특별행정구역(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대만과 관련된 중재를 총칭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어이다. 섭외중재는 일반적인 대외교역상 분쟁의 대부분은 섭외중재기관으로 지정된 CIETAC에서 행해지고 있다. CIETAC은 1954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 CCIPT)⁷⁾ 내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로 설립되었다가 1988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북경에 본부를 두고, 심천경제특구에 화남지부, 상해에 상해지부를 두고 있다. CIETAC은 전수 면에서는 세계 최대의 중재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⁸⁾, 합의성격, 또는 비합의성격의 경제무역 등 분쟁을 중재방식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한다⁹⁾.

5) 1994. 8. 31.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의 심화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대외무역분쟁 및 외국기업과의 합자, 합작 투자 관련 분쟁의 중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6) 중국의 중재법은 섭외중재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의 정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섭외 민사법률관계'에 대한 일련의 해석에 비추어볼 때 섭외중재의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조건중의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1)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법인이거나 혹은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적을 지니거나, 회사의 등록지 혹은 영업지가 서로 다른 국가 또는 분쟁의 주체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하는 경우.
- (2) 분쟁의 목적물 또는 분쟁의 객체가 외국 또는 국경을 벗어나 위치하는 경우
- (3) 분쟁을 야기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즉 계약의 체결, 이행 혹은 종료가 외국에서 일어났거나 또는 기타 섭외요소를 지닌 경우 그리고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중재도 섭외중재에 포함된다.

7) 중국국제상회(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 ; CCIIC)라고도 함.

8) 射手矢好雄・遠藤誠・張和伏, 「中國のビジネスの紛争対応システム」, 商事法務, 2004, p.140.

(3) CIETAC 중재규칙 개정

CIETAC은 1988년 중재규칙을 제정한 이후,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해오다가 2005년 5차 개정을 하였다¹⁰⁾. 2005년 CIETAC 중재규칙의 개정배경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CIETAC 중재규칙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중재 당사자 의 증가된 불만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내 다른 중재기관으로부터 CIETAC이 직면한 경쟁의 증가이다. 즉, CIETAC은 국제중재사건에 대하여는 중국내에서 독점을 해왔으나, 1996이후부터는 170여개 이상이 되는 중국 내 각 중재기관에도 국제중재사건의 관할권이 허용되면서 경쟁이 증가될 전망이다.¹¹⁾

CIETAC에 의하면, 신중재규칙의 주요 목적은 첫째, 현존 중국법에서 허용하는 한 당사자자치원칙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고, 둘째, 국제관행을 수용함으로써 중재절차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셋째,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보다 광범위한 분쟁해결방법의 선택권에 대한 사용자의 욕구에 순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¹²⁾. 2005년 신규칙은 각 조문에 제목을 붙이고, 같은 주제를 가진 조항들을 그룹화하는 구조상의 변화가 있었으며, 중재규칙과 함께 산업별로 특화된 중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특정 분야 전담 중재제도를 도입하였고¹³⁾, 국제 및 외국관련 분쟁, 홍콩, 마카오, 대만 당사자와의 분쟁 등 3가지 영역으로 관할권을 특화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중재제도의 비교법적 선행연구로는 김대현의 “우리나라 중재법, UNCITRAL 표준중재법 및 주요 선진국 중재법의 비교”¹⁴⁾를 비롯하여 최장호의 “한국과 대만의 중재법 개정에 관한 연구”¹⁵⁾, 최석범의 “한·일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비교법적 고찰”¹⁶⁾ 및 김석철의 “동

9) CIETAC 중재규칙 제2조제1항.

10) 1994년 1차, 1995년 2차, 1998년 3차, 2000년 4차 및 2005년 5차 개정되었으며, 1994년 중재법이 개정된 이후는 중국 중재법의 규정 및 국제관습에 합치시키기 위하여 개정됨.

11) Michael J. Moser & Peter Yuen, “The new CIETAC Arbitration Rules”,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21, No.3, LCIA, 2005, pp.391-392.

12) *ibid.*, p.392.

13) 이는 CIETAC의 발전방향의 하나로서, 동 규칙 제2조 “명칭과 구성” 및 제4조 “적용범위”에서 당사자는 중재위원회가 제정한 특정 분야중재규칙 또는 전문중재규칙을 적용하도록 약정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는 중재인단을 구성하고, 특정 분야를 전담할 중재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4) 김대현, “우리나라 중재법, UNCITRAL 표준중재법 및 주요 선진국 중재법의 비교”, 「부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7권제2호, 1994., pp.849-911.

15) 최장호, “한국과 대만의 중재법 개정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4권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1999.11, pp.109-127.

16) 최석범, “한·일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비교법적 고찰”, 「중재연구」, 제16권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6.3., pp.81-119.

북아 주요국의 중재법제 비교연구”¹⁷⁾ 등 많은 연구들이 있다. 중국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로서는 이주원의 “CIETAC 중재의 중재절차상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¹⁸⁾, 이시환의 “중국에서의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¹⁹⁾, 신군재·김경배의 “중국의 ADR제도와 국제중재판정의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연구”²⁰⁾, 김석철의 “청파오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중재절차 통일화에 관한 연구”²¹⁾, 차경자의 “중국의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 강제집행제도 연구”²²⁾, 윤진기의 “2005년 CIETAC 중재규칙 개정과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 개선”²³⁾ 등 많은 논문들이 있다. 한편, 석광현의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국제중재규칙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가 KCAB 국제중재규칙에 대한 유일한 논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제상학의 논문들은 각국의 중재법을 토대로 각국 중재제도의 특징들을 검토하였지만²⁴⁾, 아직까지 한국의 새로 제정된 KCAB 국제중재규칙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으며, 중국의 개정된 CIETAC 중재규칙에 대한 연구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국제중재 수요를 반영한 한국 KCAB 국제중재규칙과 중국 CIETAC의 중재규칙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각각 고찰하고자 하였다.

III. 중재절차별 KCAB 국제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의 비교

1. 적용범위 및 중재지

(1) 적용범위

KCAB의 국제중재규칙은 당사자들이 동 규칙으로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이 규칙에 따라 진행하며, 당 중재에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강행법규가

17) 김석철, “동북아 주요국의 중재법제 비교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7권 제3호, 2007.12., pp.31-56.

18) 이주원, “CIETAC 중재의 중재절차상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4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6, pp.185-201.

19) 이시환, “중국에서의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국제상학」, 제14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5.9, pp.299-319.

20) 신군재·김경배, “중국의 ADR제도와 국제중재판전의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3, pp.219-235.

21) 김석철, “청파오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중재절차 통일화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5.8., pp.37-59.

22) 차경자, “중국의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 강제집행제도 연구”, 「중재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5.8., pp.263-292.

23) 윤진기, “2005년 CIETAC 중재규칙 개정과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 개선”, 「중재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6.12, pp.91-125.

24) 석광현,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1호, 2008의 논문은 KCAB의 국제중재규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유일한 논문으로서 국제상학적인 측면보다는 중재법과 KCAB 국제중재규칙을 비교한 논문임.

우선한다²⁵⁾. 본 규칙은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할 당시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갖고 있거나, 다음 장소 중 한 곳이 당사자들의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국가에 속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즉, 당사자간 중재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중재지이거나, 계약상 의무의 실질적인 부분이 이행되는 장소 또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장소일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²⁶⁾. KCAB의 국제중재규칙은 한국내 당사자들이 아니더라도 중재 기관하고 무관하게 동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하지만, KCAB가 각국의 중재기관과 체결한 협정에는 ‘파신청인주의’를 채택한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들이 ‘파신청인주의’로 되어 있는 국제중재를 KCAB에서 하는 경우, 국제중재임에도 불구하고, KCAB에서 국제중재규칙을 적용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들면, 당사자들의 중재조항에 “한중중재협정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중국 당사자가 신청인이 되는 경우 국제중재규칙을 채택한다는 명백한 합의가 없어 기존 중재규칙의 국제중재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KCAB에서 국제적인 사건을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ICC의 중재규칙을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제정한 동 규칙이 현 KCAB의 국제적 인지도에 비추어볼 때, 유명무실한 규칙이 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KCAB는 중재협정의 “파신청인주의”에 의한 국제중재의 경우는 국제중재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을 본 규정에 삽입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된 CIETAC 중재규칙(이하 CIETAC 중재규칙이라고 함)은 CIETAC에 의한 중재를 약정하거나, 중재기관을 약정하지 않고, 동 규칙을 적용하기로 하거나, 중재기관을 정하지 않았지만 동 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하기로 약정하거나, 특수분야 중재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당해 분쟁이 그러한 규칙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²⁷⁾. CIETAC 중재규칙에서는 과거규정과는 달리 당사자들은 CIETAC이외의 중재규칙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중국이외에서 CIETAC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당사자자치원칙을 확대하였다. CIETAC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국제 또는 대외 관련 분쟁, 홍콩특별행정구역 또는 마카오톤별행정구역 또는 타이완과 관련된 분쟁 및 국내분쟁을 포함하도록 하였다²⁸⁾.

CIETAC 중재규칙 제5조에서는 중재조항이나 중재부탁의 형식으로 서면형식으로 된 경우 유효한 중재합의로 보고 있다. 특히 중재조항이나 계약에 첨부된 중재합의는 당해 계약의 나머지 조항과는 독립적이어서 당해 계약의 변경, 폐기, 해지, 양도, 만료, 무효, 취소 또는 부존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

25) KCAB 국제중재규칙 제3조.

26) KCAB 국제중재규칙 제2조.

27) CIETAC 중재규칙 제4조.

28) CIETAC 중재규칙 제3조.

들이 중재법상 중재는 임의중재로 보아, 중재기관의 중재규칙과 중재법을 별개로 보는 반면에 중국 CIETAC의 중재규칙은 중국 중재법의 하부규정으로 취급하고 있는 결과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각국의 법률은 중재합의에 대해 서면형식을 채용하는 것외에 중재합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여 해결할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²⁹⁾. 따라서 각국의 상사중재법에서는 중재의 개념이 기관중재뿐 아니라 임시중재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중재법에는 임의중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중재법은 중재기관을 약정한 중재합의를 유효한 중재합의 조건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중국 현행 중재법은 임의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³⁰⁾ 그나마, 이번 제5차로 개정된 CIETAC 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가 CIETAC이 아닌 다른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 중재 위원회의 동의 없이도 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중국 중재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의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한편,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는 ICC 중재규칙과 마찬가지로 신속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반면에 CIETAC 중재규칙은 인민폐50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인민폐50만원을 초과하나 상대방에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간이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³¹⁾.

(2) 중재지 선정

중재지 및 심리장소는 당사자 합의한 장소이다. 합의된 장소가 없는 경우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는 서울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재판정부가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한 장소를 결정하면 예외로 하고 있다³²⁾. 반면에, CIETAC은 CIETAC 본부 또는 지부를 중재지로 하고, 중재사건을 접수한 장소에서 개최하되,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CIETAC 사무국의 승인을 얻어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³³⁾. CIETAC 중재규칙은 ICC중재와 경쟁하기 위하여 중국 밖에서도 중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현지법인들이 중국 밖에서 중재하기로 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외국관련 및 외국중재사건에 관한 관리지침에서 외국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분쟁에 대하여 외국에서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할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³⁴⁾, CIETAC에서 이를 인정하였다고 하더라고 최고인민법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거절될 가능성성이 존재한다.

29) 한국 중재법 제8조, 뉴욕협약 제2조, 영국중재법(1996) 제6조, 독일중재법(독일 민사소송법 제10편; 1998) 제1029조 등 참조.

30) 담병주편(譚兵主編), 「중국중재제도연구」, 법률출판사, 1995, p.273.

31) CIETAC 중재규칙 제IV장.

32) KCAB 국제중재규칙 제18조.

33) CIETAC 중재규칙 제31조 및 제32조.

34) Michael J. Moser & Peter Yuen, op. cit., p.392.

(3) 관할권 이의

중재합의 및 관할권 이의에 대하여,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조항 및 별도의 중재합의의 존부 및 유효성에 관한 이의 등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의 존부나 유효성에 관한 판단권한을 가지게 되며, 중재판정부에 의해 당해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중재조항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³⁵⁾.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한 이의신청은 KCAB 국제중재규칙은 답변서 제출시까지 해야 하고, 중재판정부는 이에 대해 먼저 판정하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중재절차를 진행 한 후 최종 판정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한 반면에 CIETAC은 구술심리가 열리기 전 또는 서면심리로 하기로 한 경우에는 최초의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³⁶⁾.

KCAB의 국제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은 관할권이의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는 이와 관련한 판단이 중재판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CIETAC에서는 CIETAC이 결정하거나, 중재판정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양국 중재제도의 특성에 기인한다. 즉, KCAB는 임의중재의 취지를 살려, 당사자합의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을 중재판정부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중재사무국은 단순히 절차진행을 보조하는 역할이 주업무이고, 모든 결정사항은 중재판정부에 하도록 한 반면에, 중국은 기관중재의 특징을 살려 CIETAC이 중재판정부보다는 상위의 조직개념으로 보아, 중재합의에 유효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2. 증거보전 및 임시적 처분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나 법원에 증거보전 및 임시적 처분을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관련서류를 수령하면, 보전 및 임시적 조치를 명령 또는 판정의 형식으로 명할 수 있다.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의 제기 및 취한 조치를 사무국에,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³⁷⁾. CIETAC 중재 규칙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증거 및 재산의 보전신청을 한 경우 CIETAC이 상대방 거주지 또는 그 재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이첩하여 이에 대한 판결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³⁸⁾. KCAB 국제중재규칙은 중재판정부나 법원 모두에 증거보전 및 임시적 처분이 가능한 반면에 CIETAC은 법원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다. CIETAC을 통해 법원에 증거 및 재산의 보전신청을 하도록 한 CIETAC의 규정은 중재 전 보전신청을 허용하도록 되어

35) KCAB 국제중재규칙 제19조.

36) CIETAC 중재규칙 제6조.

37) KCAB 국제중재규칙 제28조.

38) CIETAC 중재규칙 제17조 및 제18조.

있는 한국의 중재제도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 일방이 중재신청을 통보받고 난 후 불리한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하여 증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였을 경우 중재판정은 그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UN모델 중재법에서도 일방 당사자가 중재절차 전이나 진행중에 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이 이러한 조치를 허용하는 것은 중재합의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서도 볼 수 있다³⁹⁾. 실제로 UCLA Law School의 Randall Peerenboom교수가 1995-1998년까지 CIETAC의 중재판정 집행신청 72건을 분석한 결과, 35건(49%)은 집행허용, 37건(51%)은 집행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거부된 37건 중 민사소송법상의 거부사유 18건, 재산부족으로 집행불가능 16건(43%), 이유불명 3건으로 나타났는데, 재산부족이유는 중국측이 재산을 다른 회사로 빼돌리거나 또는 중국기업이 적법하게 파산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⁴⁰⁾. 따라서, CIETAC 중재규칙이 보다 외국인 당사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중재 전에 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재합의를 회피하여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절차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장래 유리한 중재판정을 얻게 된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집행하는데 도움을 주어 중재합의로 이루려하는 목적을 더욱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점⁴¹⁾을 인지하고 이 규정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중재절차

(1) 중재신청 및 답변서 제출

KCAB나 CIETAC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중재신청서 및 중재비용표에 따른 중재비용의 선납 등 2가지 기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후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⁴²⁾. 답변서 제출기간은 KCAB는 30일, CIETAC은 45일로 규정되어 있다⁴³⁾. CIETAC 중재규칙에서는 기존 규칙에 있던 서면에 의한 중재인선임요청서나 사무총장에게 중재인 선임을 위임한다는 서면요청서를 요구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는 사무국이 예납금을 결정하여 양 당사자가 균등하게 예납을 하되, 일방 당사자가 예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방 당사자가 전액을 예납하도록 하고, 또한, 중재인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시간당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비용예납문제는 향후 중재절차가 어느 정도 소요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당 중재인수당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재신청시 중재비용 산정

39) 모델중재법 제9조.

40) Randall Peerenboom,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China", The China Business Review, Jan/Feb 2001, Vol.28 No.1, pp.8-11.

41) 윤진기, 전개논문, p.116.

42) KCAB 국제중재규칙 제8조, 제38조 및 제39조와 CIETAC 중재규칙 제10조.

43) KCAB 국제중재규칙 제9조 및 CIETAC 중재규칙 제12조.

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신청요금제를 두어 신청금액에 상관없이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신청비용(filing fee)으로 납입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신청금액예납제도는 신청인측 입장에서 중재비용에 대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이러한 중재비용을 부담하면서 과연 KCAB 국제규칙에 따라 중재를 할려고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신청비용은 없애야 한다.

(2) 중재인 선정

1) 중재인의 의무 및 구성

KCAB 국제중재규칙이나 CIETAC 중재규칙에서는 중재인은 공정성과 독립성의 의무를 공히 부여하고 있다. 중재판정부 구성은 단독 또는 3인으로 구성하되,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는 단독 중재인으로, CIETAC에서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 당사자합의가 없는 경우 단독중재로 진행한다는 규정은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한국중재법과 상치되는 면이 있을뿐 아니라, 거액분쟁·사건의 복잡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국제분쟁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3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경우에는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가 기간내에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을 합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중 일방이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거나, 선정된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국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⁴⁾. KCAB의 국제중재규칙은 사무국이 지정한 후보자 중에서 당사자들이 희망순위를 표시하는 현행 중재규칙보다는 당사자들 의사를 보다 강하게 반영하였다. 반면에 CIETAC에서는 15일이내에 당사자들은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CIETAC 위원장에게 위임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CIETAC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CIETAC 중재규칙은 원칙적으로 CIETAC 중재인 명부에서 중재인을 선정하되,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CIETAC 위원장이 법에 따라 위 중재인을 확정하게 되면, 공동중재인, 의장중재인 또는 단독중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⁵⁾.

한편, 의장중재인 선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의장중재인 후보를 각각 1인에서 3인의 후보자를 CIETAC에 추천하며, 만약 양당사자로부터 동일 중재인으로 추천된 중재인이 1인인 경우는 이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이 되며, 1인 이상인 경우에는 CIETAC 위원장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여 이들 중에서 1명을 선정하며, 만약 중복된 중재인이 없는 경우에는 CIETAC 위원장이 양당사자가 제출한 후보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장중재인으

44) KCAB 국제중재규칙

45) CIETAC 중재규칙 제23조.

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⁴⁶⁾. 의장중재인 선정 방식은 CIETAC 중재의 특징이지만,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가 없는 한 외국 당사자들은 외국중재인을, 중국 당사자들은 중국중재인을 추천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추천한 후보가 중복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아 결국은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CIETAC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⁴⁷⁾.

CIETAC의 중재규칙은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중재인을 선정할 때 분쟁 당사자와 다른 국적의 중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⁴⁸⁾. CIETAC의 중재인 선정방식은 국제분쟁의 경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중립성에 많은 의구심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국제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법원의 중립성을 믿지 못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정한 규칙과 중재인에 의하여 보다 중립적인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다⁴⁹⁾. 당사자들이 1인의 중재인씩 선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 CIETAC 중재인명부에 있는 중국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으로 지명된 경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중재판정부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예로서, CIETAC의 (2001) 貿易仲裁字0077호 및 (2002) 貿易仲裁字0081호 사건은 동일 사건이 2번에 걸쳐 중재가 이루어진 사건인데, 첫 번째 중재에서 피신청인이 선정한 중재인이 2번째 중재에서 CIETAC에 의해 의장중재인으로 지명되었는데, 한국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할 경우에, 신청인측에서는 의장중재인에 의한 공정한 절차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중재인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⁵⁰⁾.

2) 중재판정부 구성기한

중재판정부 구성기한에 대하여, 단독 중재인인 경우 KCAB는 30일 CIETAC은 15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KCAB에서는 사무국에서 이 기한의 연장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⁵¹⁾, CIETAC에서는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즉,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는 단독중재인에 의한 절차진행시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되, 합의로 중재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⁵²⁾. CIETAC에서도 당사자가 합의로 중재인을 선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CIETAC 위원장이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정기간은 15일로 하였

46) CIETAC 중재규칙 제22조.

47) 2008년5월현재 CIETAC중재위원회 중재인수는 737명이며, 이중 중국인이 571명, 외국인이 161명임(<http://www.cietac.org.cn/>; 2008년5월1일방문).

48) 성백영,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의 내용과 문제점 고찰 - 섭외중재제도를 중심으로 -”, 한중법학회 제18회 정례학술발표회 발표 논문, 1998.p.34.

49) Clare Ambrose and Karen Maxwell, London Maritime Arbitration, Lloyd's Shipping Library, 2002, pp.102-106.

50) 이주원, 전재논문, p.197.

51) KCAB 국제중재규칙 제12조 및 CIETAC 중재규칙 제22조.

52) KCAB 국제중재규칙 제12조.

다⁵³⁾. 한편, 3인의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경우, KCAB의 국제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들이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고, 선정된 중재인이 제3의 의장중재인 선정기한을 30일을 정하고 있는 반면에 CIETAC에서는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의장중재인까지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⁵⁴⁾. KCAB 국제 규칙상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이 의장 중재인선정기한을 30일로 정한 것은 신속한 중재절차라는 관점에서 단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KCAB의 기존 중재규칙에서 국제중재의 경우 중재인 선정기한을 30일 둈 것은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아 우편에 의한 통지 시한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통지방법이 다양해져 중재인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며, 효율성을 강조하여 미합의시 단독중재로 진행하고자 하는 규정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한편, KCAB의 국제중재 규칙에서는 3인 중재시 당사자가 선정하도록 한 1인의 중재인선정기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중재판정부 구성이 자연될 가능성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기간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중재인의 기피 및 교체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그러한 사실과 이유를 기재하여 KCAB 및 CIETAC 사무국에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은 양 기관 모두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기피신청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중재인이 사임하지 않는 경우 KCAB는 사무국에서, CIETAC은 CIETAC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은 중재인기피에 관하여 한국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또한 중재인기피절차에 있어서도 한국은 중재법에서는 중재인기피절차는 당사자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리고 중재판정부 결정에 불복한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되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⁵⁾.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는 사무국에 신청하여, 당사자가 사임하지 않은 경우 사무국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 중재법에서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내리거나, 위원장이 중재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공동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⁵⁶⁾, 이에 따라 CIETAC 중재규칙에도 같은 취지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⁵⁷⁾. 이는 임의중재와 기관중재라는 차이에 의한 것으로, 임의중재에서는 당사자합의가 우선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중재인 기피결정이 법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반면에 기관중재의 경우에는 동 중재기관이 중재인의 기피를 결

53) CIETAC 중재규칙 제23조.

54) CIETAC 중재규칙 제22조.

55) 한국중재법 제14조.

56) 중국 중재법 제36조.

57) CIETAC 중재규칙 제26조.

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KCAB에서 중재인기피신청을 한 경우, 국제중재 규칙에 따라 사무국에서 중재인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재법에 따라 일방이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중재인기피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재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중국은 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재인기피와 관련한 CIETAC의 중재가 보다 신속한 절차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KCAB 및 CIETAC 중재규칙에서는 중재인의 기피 결정, 중재인의 사망 등으로 중재인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 중재인선정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교체 중재인을 선정하며, 중재판정부는 이전의 중재절차를 반복할 것인지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⁸⁾.

(2) 중재심리

1) 심리방식 및 1차 심문기일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비공개로 중재심리를 하게 된다. KCAB 국제중재규칙은 중재판정부가 심리를 전적으로 관장하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⁹⁾. CIETAC은 중재판정부가 심리를 하는데 있어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구술심리가 필요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⁶⁰⁾. 심리날짜 통지에 대하여, KCAB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 절차진행을 위한 잠정적인 일정표를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재판정부의 구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국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⁶¹⁾ 반면에 CIETAC은 1차 구술심리 일정은 중재판정부가 정하며 적어도 개최 20일 전에 CIETAC 사무국이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⁶²⁾. 중재제도의 장점인 신속성 및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재심리방식에 있어서는 CIETAC의 절차가 KCAB 국제중재규칙보다 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당사자의 궤석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 궤석한 경우에도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⁶³⁾, CIETAC 규칙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즉, 신청인이 궤석하거나, 중재판정부의 허락없이 퇴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궤석하거나, 중재판정부의 허락없이 퇴장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하여 궤석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또

58) KCAB 국제중재규칙 제14조 및 CIETAC 규칙 제27조.

59) KCAB 국제중재규칙 제26조.

60) CIETAC 규칙 제29조.

61) KCAB 국제중재규칙 제15조.

62) CIETAC 중재규칙 제30조.

63) KCAB 국제중재규칙 제29조.

한, 반대증재신청이 들어와 병합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에는 퀸석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⁶⁴⁾.

4) 증거조사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KCAB 국제중재규칙은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절차 진행중 언제라도 문서, 서증 또는 필요, 적절하다고 보는 기타 증거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지배하에 있고, 중재의 대상과 관련이 있는 재산, 장소 기타 물건에 대한 중재판정부, 다른 당사자 또는 전문가의 조사를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및 기타 증거의 요약본을 중재판정부와 상대방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중재판정부는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성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할 권한을 갖는다⁶⁵⁾. 또한 중재판정부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중재판정부가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는 특정 쟁점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보고서 수령후, 그 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당사자들이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⁶⁶⁾. CIETAC의 중재규칙에서도 당사자들로 하여금 신청취지, 답변 및 반대신청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쟁점을 명확히하기 위해 전문가 및 사정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KCAB 국제중재규칙과 대동소이하다⁶⁷⁾. 하지만,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는 증거제출, 전문가의 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없는 반면에 CIETAC 중재규칙은 CIETAC에서 이를 접수하여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KCAB는 임의중재로 이루어지는 ICC중재규칙을 준용하여 중재판정부가 주도적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하도록 제정된 반면에 중국은 기관중재로 CIETAC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5) 언어 및 준거법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는 언어는 합의된 언어가 없는 경우 계약 언어를 비롯한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중재언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⁶⁸⁾. CIETAC 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언어가 우선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 중국어를 중재절차의 공식언어가 되도록 하고 있다⁶⁹⁾. 중재판정부가 당해 언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선택으로 중재합의나 관련

64) CIETAC 중재규칙 제34조.

65) KCAB 국제중재규칙 제22조.

66) KCAB 국제중재규칙 제23조.

67) CIETAC 중재규칙 제36조·제39조.

68) KCAB 국제중재규칙 제24조.

계약의 체결에 사용된 언어, 또는 중재요청서(a request for that dispute to be referred to arbitration)와 같은 진술서에 사용된 언어에서 중재언어를 추론할 수 있다.⁷⁰⁾ 그러나 CIETAC 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바로 중국어를 중재절차의 공식언어로 채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국당사자에 대한 배타적인 뉘앙스를 준다. 즉, 실무적으로 섭외중재사건에 있어서 중국측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사용할 언어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결국 CIETAC에서의 중재는 중국어가 공식언어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외국당사자는 자신이 제출하는 서면·서증 및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서증을 번역하고 중국변호사를 채용하거나 심리절차 및 증인심문절차에서 번역·통역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부담하여야만 하는 불편을 겪게 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 준거법은 당사자가 중재판정부가 적용할 실체법과 법원칙을 합의하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 계약조항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고 있다⁷¹⁾. 이 규정은 중재법상 준거법 결정 시 가장 밀접한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과 배치되는 규정이다. CIETAC 중재규칙에서는 준거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중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 국제분쟁의 경우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중재합의의 효력이나 사실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뉴욕협약과 모델중재법에서는 본국 법 또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을 적용하거나, 판정지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²⁾. 만약 중국인민법원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외국인과 관련된 국제중재합의의 효력유무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법률을 적용해 판정한다면 외국인 당사자는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하겠다⁷³⁾.

4. 중재판정

(1) 중재판정기한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의 중재판정은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서면 제출일과 심리 종결일 중 나중의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내리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 요청이 있거나 판정부가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⁷⁴⁾. 반면에 CIETAC은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리되, 중재판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CIETAC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⁷⁵⁾.

69) CIETAC 중재규칙 제67조.

70) Hans van Houtte, "Conduct of Arbitral Proceedings," Petar Sarcevic(ed), *Essays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London: Graham & Trotman, 1989, p.116.

71) KCAB 국제중재규칙 제25조.

72) 뉴욕협약 제5조 및 모델중재법 제34조 및 제36조.

73) 성백영, 전재논문, pp.26-27.

74) KCAB 국제중재규칙 제33조.

KCAB의 국제중재규칙은 당사자합의를 보다 존중하는 임의중재를 기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판정기한을 중재판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CIETAC 중재규칙은 중재법상 기관중재의 토대로 제정되고 개정된 것으로 CIETAC이 최종적인 판정 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중재판정방식 및 효력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의 중재판정은 중재인 과반수의 결의에 따르며, 결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의장 중재인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면으로 하되 당사자간 달리 합의가 없는 한 판정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중재판정문에는 판정일자와 중재인 전원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일부 중재인이 서명을 기피하는 경우 다른 중재인이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을 대신할 수 있다. 중재판정은 종국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⁷⁶⁾.

CIETAC 중재규칙에서는 중재판정은 과반수 중재인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의장중재인이 정한다. 중재판정문에는 CIETAC의 날인이 있어야 하며, 의장중재인 또는 단독 중재인의 의견에 따른 중재판정이 아닌 경우에는 과반수 중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반대의견의 중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록하여 중재판정문에 첨부할 수 있고, 해당 중재인은 중재판정문에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반대의견은 중재판정의 일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중재판정은 종국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⁷⁷⁾.

CIETAC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에 서명을 하기 전에 심사를 위해 CIETAC에 판정문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CIETAC은 중재판정부의 독립적인 판정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특정 쟁점을 환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⁷⁸⁾. 중재판정문을 사전에 CIETAC에 제출하도록 한 본 규정은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적인 면이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중재판정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재판정부의 독립적인 판정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단서를 두고 있지만, 판시라는 중국 문화의 특징을 볼 때 CIETAC에서 사전 심사를 한다는 자체가 중재판정부 입장에서는 당해사건에 대한 CIETAC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며, 특히 당사자합의가 되지 않아 CIETAC위원장이 지명한 중재인인 경우에는 완전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중재위원회는 그 권한 범위가 넓어 중재판정부의 중재업무에 간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⁷⁹⁾.

한편, 양 규칙에서는 중간판정 및 일부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들 판정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75) CIETAC 중재규칙 제42조.

76) KCAB 국제중재규칙 제30조-제32조.

77) CIETAC 중재규칙 제43조 및 제44조.

78) CIETAC 중재규칙 제45조.

79) 이해완, “중국의 사법제도” in <http://chunma.yu.ac.kr/~j9917186/date-13.html>)

(3) 화해판정 및 중재판정의 정정

KCAB에서는 중재신청과 예납금이 납부된 이후, 당사자가 화해하여 일방이 중재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 화해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화해중재판정을 요구하지 않고 화해합의서가 사무국에 제출된 경우 중재판정부의 임무는 종료되며 중재절차는 종결된다⁸⁰⁾. CIETAC에서는 CIETAC에 관계없이 당사자들이 화해를 하여 화해중재판정을 요청한 경우 CIETAC 위원장은 1인의 단독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화해중재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⁸¹⁾. 한편, CIETAC 중재규칙 제40조에는 조정과 중재절차를 병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조정절차중 화해가 성립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화해조건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⁸²⁾. 이는 중재와 조정은 원래 별개의 분쟁해결방법이지만, 섭외중재 절차진행중에 중재와 조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중국 섭외중재제도의 특징을 반영한 규정이다.⁸³⁾ 즉, 섭외중재 조정은 중재과정 중 중재 쌍방 당사자의 청구 혹은 동의를 거쳐 중재판정부 또는 중재기관의 주관하에 쌍방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협상을 하고 상호 양보하여 합의가 성립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과정을 가리킨다. 중재와 조정이 결합됨으로써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당사자의 공동이익에도 부합된다.

한편, KCAB 국제중재규칙 및 CIETAC 중재규칙에 의하면, 판정 후 30일 이내에 중재판정문의 오기, 오산, 오탏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정정할 수 있는데, 정정이나 해석은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⁸⁴⁾.

V. 결 론

한국의 KCAB 국제중재규칙과 중국의 CIETAC 중재규칙은 양 기관이 국제적인 중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의 중재규칙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 KCAB 국제중재규칙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신청요금이 과다하다는 점이다. 중재인 수당을 시간당으로 계산하여 현실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소요 시간을 예측하지 못해, 비용산출이 실무적으로 어렵고, 여기에 신청요금으로

80) KCAB 국제중재규칙 제34조.

81) CIETAC 중재규칙 제40조.

82) CIETAC 중재규칙 제40조.

83) 蔣新苗 외 編, 「仲裁法 實例說」, 湖南人民出版社, 2003, p.260.

84) KCAB 국제중재규칙 제36조 및 CIETAC 중재규칙 제47조.

100만원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요금을 없애고, 개략적인 시간을 산정하고, 절차 중에 이를 연장할 경우 추가로 예납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중재비용을 예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당사자합의가 없을 경우 단독중재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국제사건의 금액이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단독중재인이 부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중재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하겠다. 셋째, 긴 중재인선정기한이다. 중재인선정기한을 30일로 하였는데, 통신수단의 발달로 볼 때, 이 기한은 줄여 신속한 해결이라는 중재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중국 중재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중재법상 중재합의에 중재기관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중재만을 인정하고 당사자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2005년에 개정된 CIETAC 중재규칙은 기존의 규칙과는 달리, 당사자가 중재규칙을 선택할 수 있고, CIETAC 중재규칙도 수정할 수 있도록 당사자자치권을 확대하였는데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재인선정은 중재법의 규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즉, CIETAC 위원장이 당사자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인을 지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중재판정은 다수결에 의하되 중재판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에 의장중재인의 의견에 따르도록 한 규정과 중재판정부가 판정문초안을 CIETAC에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한 규정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왜냐하면, CIETAC은 국무원 대외무역부의 감독단체인 중국국제상회 내에 설치되어 있어 시장경제국가의 중재기관처럼 완전한 민간단체로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KCAB의 국제중재규칙과 CIETAC의 중재규칙을 한중간 무역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고 할 경우에 적용할 것으로 가정하에 양 규칙을 중재절차에 따라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무역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양 규칙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양 규칙이 가지고 있는 관련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논문에서는 본 논문을 토대로 각 절차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김대현, “우리나라 중재법, UNCITRAL 표준중재법 및 주요 선진국 중재법의 비교”,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7권제2호, 1994.

김석철, “청따오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중재절차 통일화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5권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5.8.

_____, “동북아 주요국의 중재법제 비교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7권제3호,

2007.12.,

김연호, “중국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의 중재절차개설”,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1997 가을.

김태훈, “중국 섭외중재제도 현지조사”-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를 중심으로-,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02 · 가을.

대한상사중재원 · 한국중재학회, 「주해 중재법」, 2005.

문준조, “중국의 섭외경제분쟁해결제도와 사례”, 「법제연구」, 법제연구소, 1995, in
<http://www.ikis.re.kr/jsp/main.jsp>.

석광현,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제1호, 2008.

성백영,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의 내용과 문제점 고찰 - 섭외중재제도를 중심으로 -”, 한
중법학회 제18회 정례학술발표회 발표 논문, 1998.

신군재 · 김경배, “중국의 ADR제도와 국제중재판전의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국제
상학」, 제19권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3.

윤진기, ”2005년 CIETAC 중재규칙 개정과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 개선“, 「중재연구」,
제16권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6.12.

이시환, “중국에서의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국제상학」, 제14권 제3호, 한국
국제상학회, 2005.9.

이주원, “CIETAC 중재의 중재절차상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4권제3
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6,

이해완, “중국의 사법제도” in <http://chunma.yu.ac.kr/~j9917186/date-13.html>

차경자, “중국의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 강제집행제도 연구”, 「중재연구」, 제15 권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5.8.

최석범, “한 · 일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비교법적 고찰”, 「중재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중
재학회, 2006.3.

최장호, “한국과 대만의 중재법 개정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4권제3호, 한국국제상
학회, 1999.11.

한국중재학회외, 「中 · 韓 · 日 國際仲裁學術大會 發표자료집」, 2003.8.18.

담병주편(譚兵主編), 「중국중재제도연구」, 법률출판사(북경) 1995.

章武生 等 共著, 「司法現代化與民事訴訟制度的建構」, 法律出版社, 2000.

蔣新苗 외 編, 「仲裁法 實例說」, 湖南人民出版社, 2003.

Clare Ambrose and Karen Maxwell, London Maritime Arbitration, Lloyd's Shipping
Library, 2002.

Diamant N.J.,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Chin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44, No.4, August 2000.

Michael J. Moser & Peter Yuen, "The new CIETAC Arbitration Rules",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21, No.3, LCIA, 2005,

Randall Peerenboom,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China", The China Business Review, Vol.28 No.1, Jan/Feb 2001.

<http://chunma.yeungnam.ac.kr/~j9516181/rlist/rlist5.html>

<http://stat.kita.net/top/state/>(2008.4.1 방문)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KCAB and Arbitration Rules of CIETAC

Koon-Jae Shin

The KCAB enacted their new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the KCAB rules) in 2007 wheres The CIETAC revised their arbitration rules(the CIETAC new rules) in 2005. This article investigates some practical problems on both rules respectively and helps trading companies to proceed arbitration by these rules. This study finds some problems as follows. There are the following problems in KCAB rules.

First, application fee is too expensive fee. So KCAB should cut down their application fee. Second, if there is no agreement on number of arbitrators, the arbitration is processed by sole arbitrator. But it is very difficult for sole arbitrator to process international arbitration due to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such as complexity of case and a large sum of claim. Third, a period of selection of arbitrator is long. In view of developing of communication means, this period is needed more short. In the meantime, there are the following problems in CIETAC rules. First, though the CIETAC new rules enlarges the right of parties autonomy such as selection of arbitration rules or revise of it, China arbitration Act stipulates a institute arbitration which restrict partie's autonomy. Second, if there is no agreement on arbitrators, the CIETAC appoints chair of tribural in three arbitrators ion or sole arbitrators. is processed by sole arbitrator. Third, a draft of arbitral award is checked by the CIETAC in advance. Especially, the two latter problems is possible for foreigners to have doubts of fairness of CIETAC arbitration. Becuase the CIETAC is not a complete independent private institution.

Consequently, I suggest that Korean trading companies should examine problems of these two arbitration rules carefully, and select a most appropriate rules for settlement of their disputes with Chines companies.

Key Words :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KCAB, Arbitration Rules of CIETAC,
Domestic Arbitr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